

「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」 추진계획 공고

「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」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5.2.21.(금)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1. 21.
환경부장관

1

사업 목적

- 기후위기 심화·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채택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기업의 사업화 지원

2

사업 개요

- (사업명)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
- (지원 규모) 총 28억원(기업 당 최대 7억원/년, 4개사 내외)
※ 지원기업 수 및 지원규모는 신청·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
- (지원 기간) 최대 3년 지원 가능하며, 2·3차년도는 연차점검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
※ (1차년도) '25.4월(협약 예정월)~12월 (2차년도) '26.1월~12월
(3차년도) '27.1월~11월
- (지원 대상) 환경산업* 또는 녹색산업**을 영위하는 중소기업***·중견기업****
*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
**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
*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****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

○ (지원 분야) 기후테크

구분	관련 기술(예시)
클린테크 (Clean Tech)	▶ (재생에너지) 재생에너지 생산, 에너지 저장 장치, 건물 전기화 등 ※ 에너지신산업, 탈탄소에너지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카본테크 (Carbon Tech)	▶ (탄소포집) 직접포집(DAC), CCUS, 생물학적 탄소제거 등 ▶ (공정혁신) 제조업 공정 개선, 탄소저감 연·원료 대체 등 ※ 모빌리티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에코테크 (Eco Tech)	▶ (자원순환) 자원 재활용, 폐자원 원료화, 에너지 회수 등 ▶ (폐기물절감) 폐기물 배출량 감축, 폐기물 관리시스템 등 ▶ (업사이클링) 친환경 생활소비제품 등
푸드테크 (Food Tech)	▶ (스마트식품) 음식물쓰레기 저감, 친환경 포장, 식품 부산물 활용 등 ※ 대체식품, 애그테크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지오테크 (Geo Tech)	▶ (우주기상) 위성 탄소관측, 모니터링, 기후감시·예측, 기상정보 등 ▶ (기후적응) 물산업, 재난 방지 시설·시스템 등 ▶ (데이터) 기후·탄소 데이터 컨설팅 등

※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 등 단계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

○ (지원내용 및 조건) 지원 내용 내에서 보조사업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신청(국고보조금 기준 최대 7억원, 자기부담금은 비율 고려하여 반영)

지원내용	지원요건	수행 형태	사업비 구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제품 제작·개선, 성능평가, 인·검증, 홍보 등 사업화 소요자금 ▶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소요 자금(사업화 전략, 기술·경영, 투자유치, 온실가스 감축 검증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제품 제작·개선 등을 통하여 협약 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▶ 신청사업 관련 환경기술* 보유** 	단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소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고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% 이하 - 자기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% 이상 ▶ 중견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고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% 이하 - 자기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50% 이상

*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기술

** 국가R&D 성공판정서, 특허 출원·등록, 특허권리전부이전 혹은 기술전용실시권 획득 증빙 제시 필요

※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자기부담금 기준 10%p 경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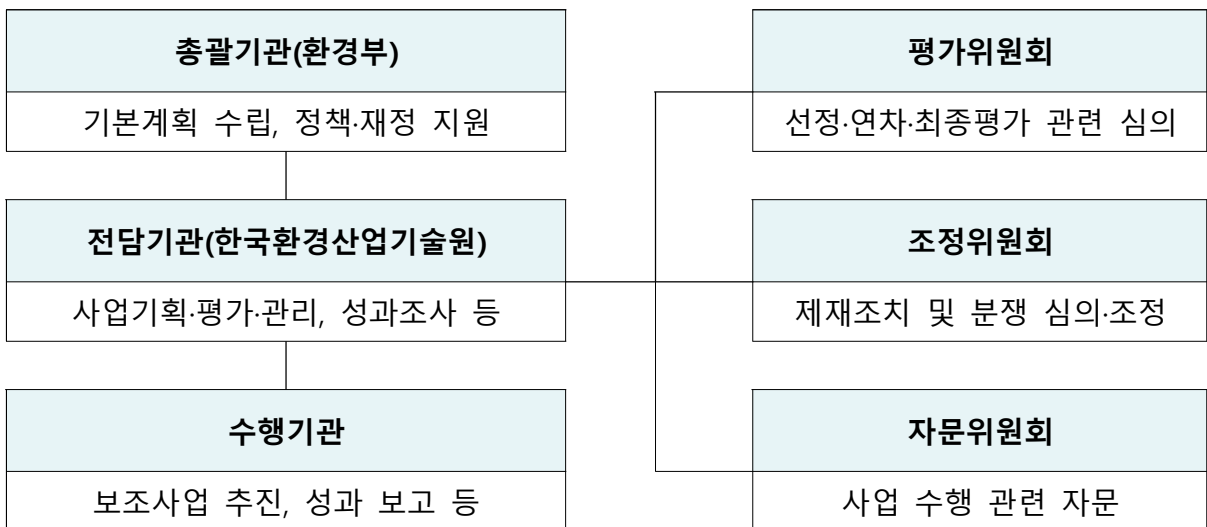
※ 중소기업은 자기부담금 중 80% 이상을, 중견기업은 자기부담금 중 60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

○ **(신청자격 제한)** 다음 기준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

< 신청자격 제한 기준 >	
①	부도 또는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②	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③	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④	휴·폐업 중인 경우
⑤	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·영업·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
⑥	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
⑦	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
⑧	사업화(매출발생)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
⑨	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⑩	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⑪	「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⑫	「민사집행법」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따른 채무불이행자의 경우

※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

○ **(추진체계)**



3

선정 절차

구분	내용	비고	일정
① 사업공고	환경부(한국환경산업기술원) 누리집 공고	환경부(한국환경산업 기술원, 전담기관)	'25.1월
② 신청접수	사업화 계획서 등 서류 온라인 접수	신청기업 → 전담기관	'25.2월
③ 사전 검토	제출서류, 자격요건, 신청자격 제한 대상 여부 등 검토 ※ 사전평가는 생략 가능	전담기관	'25.2월
④ 발표평가	기술성, 사업성, 시장성, 기업역량 등 평가 ※ 65점 미만은 탈락처리하고, 65점 이상은 가점을 반영 종합평가점수 산정 후 우선순위 결정	전담기관 (평가위원회)	'25.3월
⑤ 전담기관 조정 및 최종 선정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화 계획 및 사업비 조정 • 지원대상 및 후보 확정 등 	전담기관 (평가위원회)	'25.3월
⑥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결과 개별통보 •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비 지급(80%) 	신청기업 ↔ 전담기관	'25.4월
⑦ 보조사업 수행	사업화 계획서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	수행기관 (신청기업)	~'25.4월
⑧ 진도 점검	보조사업 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과정 점검 ※ 진도점검 등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비 잔여분(20%) 지급	수행기관 ↔ 전담기관	'25.8~9월
⑨ 연차 점검 및 최종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해연도 보조사업 수행결과 및 차년도 추진계획 평가 ※ 연차점검 결과 미진 보조사업은 중단 및 후속조치 ※ 3개년 보조사업 모두 종료 후 보조사업 수행결과 최종 평가 	수행기관 ↔ 전담기관	'25.12월

※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

4

신청방법 및 신청서 제출

- (신청기간) 2025.2.10.(월) 09:00 ~ 2025.2.21.(금) 18:00 까지
- (신청방법) “온라인 접수 시스템”(☞ 클릭)을 통해 신청
 - ※ 상기 하이퍼링크를 통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의 URL을 활용(크롬(chrome) 또는 엣지(Edge) 사용)

https://www.konetic.or.kr/eval/com/popup/getAplRqtMain.do?BIZ_PBANC_CD=17364073235715x

- ※ 우편 접수(서면)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
- ※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사업 안내서(붙임 1) 참고

<사업 문의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문의처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·사업화실■ 전화 : 070-4370-7523■ 전자우편 : Lyra@keiti.re.kr	<시스템 문의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문의처 : 시스템 개발실■ 전화 : 02-2284-1485■ 전자우편 : Lyra@keiti.re.kr
---	---

5

유의사항

-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‘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’에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, 동시 신청한 경우 모두 신청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환경부 ‘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’과 중소벤처기업부 ‘그린벤처 프로그램’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그 밖에 유의 사항은 사업 안내서(붙임 1)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서 1부.
2.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. 끝.